

제194회 제1차 정례회
의회운영위원회 (2013.07.12)

의안 검토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김성윤]

<의안번호 제2013 - 60호>

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
나. 제 출 자 : 조선제 · 조기원 · 이애숙 · 이성복 · 김재권 ·
강창남 · 백범영 · 안철우 · 강철우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 7. 2.

2. 제안이유

- 의회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제1장 총칙
 - 정의(안 제2조), 적용 범위 등(안 제3조)
-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
 - 겸직신고 의무(안 제7조)
 - 영리행위 제한(안 제8조)
 - 회의출석 의무(안 제9조) ⇒ 불참시 의정활동비 감액 규정

○ 제3장 행동강령

-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(안 제13조)
- 이권 개입 등의 금지(안 제14조)
-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, 금전 거래 등 제한(안 제17조, 제22조)
- 의원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(안 제18조)
- 국내외 활동 제한(안 제19조) ⇒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
-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(안 제23조)
-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(안 제25조)
-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(안 제2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

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의회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지방의회의원

행동강령」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
-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공직자 행동강령)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.

1.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
4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

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. 7. 2.

나. 제 출 자 : 조선제 · 조기원 · 이애숙 · 이성복 · 김재권 ·
강창남 · 백범영 · 안철우 · 강철우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 7. 2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- 업무추진비 사용·집행 (안 제3조)
-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(안 제4조)
-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(안 제6조)
-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규칙안은 「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
- 이 규칙안과 관련하여,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참고자료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공직자 행동강령)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.

1.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·이권개입·알선·청탁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
4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,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